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의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 중심 -



2021.3.10

발표자 :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장 김태성

발표순서

2021년 상반기 연구비 집행관리 포럼

I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1. 제정취지
2. 법령체계
3. 하위규정 체계변화
4. 적용범위 및 경과조치

II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주요 내용

1. 규정체계
2. 기관별 책무
3.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III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등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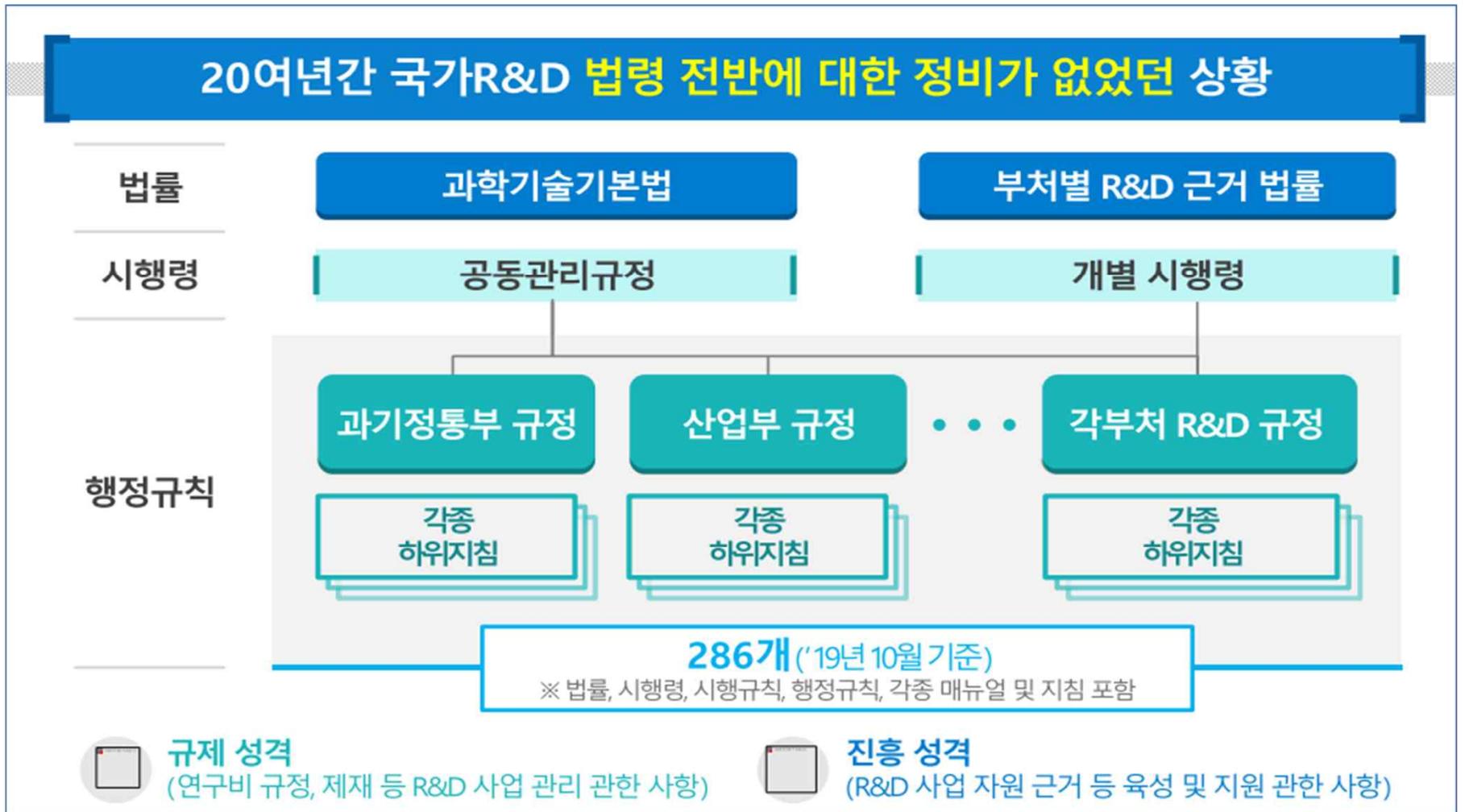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특례(사용기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2021.1.1시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및 종전 규정 등을 단순 비교분석한 자료로써, 과기정통부 등 유권해석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부탁드립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취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흥과 관련 사항은 **개별 부처 소관 법률 적용**
- ✓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제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로 통합 및 체계화**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주요 법령 체계(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 적용규정 중심)

종전		
법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시행령	공동관리규정*	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동관리규정 규칙*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처리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처리규정*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변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기존 공동관리규정 및 규칙,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처리규정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은 2021.1.1자 폐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규정 체계 변화

종전
1.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고시)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고시)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고시)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고시)
5.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고시)
6.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고시)
7. 연구노트지침(훈령)
8. 연구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9.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고시)
10.연구지원시스템 통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신설>
<신설>
<신설>

변경
1. (유지 및 통합)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2. (유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고시)
3. (유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고시)
4. (유지) 연구노트지침(고시)
5. (유지)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 지정(고시)
6. (변경) 정보처리기준(고시)
7. (유지) 통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8. (신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훈령)
9. (신설)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운영규정(제정중)
10.(신설) 연구지원기준(제정중)

적용범위 및 경과조치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법 제2조 제1호)

*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용어가 과학기술기본법 등 100여개 달하는 법률에서 사용하나, 구체적인 정의 없었음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모든 국가 R&D과제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법 제3조 제1~5호에 해당될 경우 적용제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특별법적 지위 명시**(법 제4조)

법 제9조~제12조 및 제14조 및 제15조 사항을 다른 법률 적용가능대상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시행령 제5조 : 학술진흥법 제7조, 고등교육법 제7조, 산학협력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과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

- 일반회계
-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우편사업특별회계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원자력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일반회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B)	증감(C=B-A)	증감률(C/A)
360-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0	960,000	960,000	순증
360-06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0	40,000	40,000	순증
1200 기초연구전환	1,591,914,000	1,886,873,000	294,959,000	18.5
1234 기초연구지원	1,499,748,000	1,790,698,000	290,950,000	19.4
301 개인기초연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R&D)	1,220,838,000	1,476,968,000	256,130,000	21.0
300 연구개발출연금	1,220,838,000	1,476,968,000	256,130,000	21.0
360-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220,838,000	1,476,968,000	256,130,000	21.0
302 집단연구지원(R&D)	278,910,000	313,730,000	34,820,000	12.5
360 연구개발출연금	278,910,000	313,730,000	34,820,000	12.5
360-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278,910,000	313,730,000	34,820,000	12.5
1235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67,906,000	69,868,000	1,962,000	2.9
410 기초연구기반구축(R&D)	11,482,000	12,243,000	761,000	6.6
360 연구개발출연금	11,482,000	12,243,000	761,000	6.6
360-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11,482,000	12,243,000	761,000	6.6

3. 경과조치

➤ '21.1.10이후부터 신규 또는 계속과제 모두 적용(법 부칙 제1조)

✓ (사례1) 1단계('18~'22년, 5년) 연구과제의 당해연구기간이 **2021.1.1이전에 종료된** 계속과제의 경우

사업연도	'18년	'19년	'20년 (1.1~12.31)	'21년 (1.1~12.31)	'22년
사용기준	종전규정 (연차정산)			혁신법 적용 (단계정산)	
정산기준					
회수기준					

✓ (사례2) 1단계('18~'22년, 5년) 연구과제의 당해연구기간이 **2021.1.1이후에 종료된** 계속과제의 경우

사업연도	'18년	'19년	'20년 (1.1~6.30)	'21('20.7.1~21.6.30) '20.7.1~'20.12.31	'21.1.1~6.30	'22년
사용기준	종전규정 (연차정산)			종전규정	혁신법 적용	혁신법 적용(단계정산)
정산기준						
회수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과기정통부, '21.2.26, p51)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주요 내용

-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만 적용되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는 제외
-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사용기준은 현재 마련중으로 설명자료에서 제외

1 규정체계

1. 조문구성

➤ 본칙 117개조, 부칙 5개조, 별표 8개, 별지 17개 서식

➤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 제2장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 제1절 사용용도(제5조~제17조)

☑ 제2절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제18조~제33조)

☑ 제3절 정부출연기관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제33조~제44조) ☑ 제4절 대학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제45조~제51조)

☑ 제5절 기타비영리기관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제52조~제59조) ☑ 제6절 영리기관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제60조~제69조)

☑ 제7절 사용절차 등(제70조~제72조)

➤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제73조~제74조)

➤ 제4장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용도(제75조~제78조)

➤ 제5장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의 방법과 절차(제79조~제85조)

➤ 제6장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제86조~제99조)

➤ 제7장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특례(제100조~제111조)

➤ 제8장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제112조~제115조)

➤ 제9장 보칙(제116조~제117조)

1. 중앙행정기관의 책무(제3조)

- ▶ 연구개발기관이 법, 영, 시행규칙, 고시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 준수하도록 안내
- ▶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지 말 것

2. 연구개발기관의 책무(제4조)

- ▶ 연구개발기관이 법, 영, 시행규칙, 고시,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협약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연구개발비 사용
- ▶ 참여연구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지 말 것

3 연구개발비 공통계상 및 인정기준(사용기준 제21조 및 제22조)

공통계상기준

✓ (규정) 별도로 정하지 않은 규정은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제21조 제3항)

- 예시 : 연구개발비 적용규정에 없는 규정에 대한 계상기준 문의 쇠도

✓ (제한) 연구개발비 공통사항에 대한 계상 제한항목 명확(제21조 제4항)

- 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 계상 제한
- 유형성 비용(주류 등), 동일한 비용에 대한 중복계상, 동일한 참여연구자에 대한 중복 계상 제한
- 연구개발기관 내부 거래 제한 항목 명확히 제시

공통인정기준

✓ (사용) 연구개발기간(단계(최종)종료)의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입증할 증명자료 구비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른 물품 및 서비스 계약 취소 및 변경 등 부대비용 포함

✓ (검수)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 포함) 구매 시,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 및 검수

🎯 주요 달라지는 사항

종전	
계상 불가	부가가치세 등 환급 시에만 사용잔액 제외 등 판단 모호(신고의무만 존재)
연구비 부당회수금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위주 제한
내부 거래	연구개발기관의 내부거래 정의 불명확
검수 강화	비영리기관은 연구비 중앙관리 원칙만 존재
사용 방법	1)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 기관 자체 법인카드 사용근거 부재 2) 불가피한 경우 직접비의 1~2% 내 현금사용가능
연구비 이관 방법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월할, 일할 등)

변경
실제 환급여부와 상관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등 해당금액 계상불가(제21조 제4항)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비 사용금액 전부 또는 일부 되돌려받는 행위 금지(사용용도 위반행위 해당) (제33조)
연구개발기관의 내부거래 가능여부 명확한 근거 제시(제21조 제4항)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 및 검수 의무 (제22조제3항)
1)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 법인카드 사용근거 마련 2) 현금사용 가능비율 삭제(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가능)
기관유형별 직접비 및 간접비 이관방법 마련 (제36조, 제45조, 제54조, 제62조)

① 사용용도(제6조)

- ☑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 지급하는 인건비(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참여하는 동안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② 사용기준(제39조, 48조, 57조, 65조)

- ☑ **(현금계상)**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 교원(단,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외)은 제외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인 경우에 한해 현금계상 가능

- ☑ **(계상율)**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율은 100%(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연은 130%) 이내 관리

* <관리단위> 정부출연기관 : 연 단위, 그 외 기관 : 월 단위, <시스템입력주기> 기관의 회계연도일까지 입력

* 총인건비계상율 = 인건비계상율+학생인건비계상율+학생인건비지급률+미지급인건비계상율

총전(참여율)

인건비(4대보험 본인부담금) +
4대보험기관부담금 + 퇴직급여충당금

변경(인건비계상율)

인건비(4대보험 본인부담금)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별도 지급

인건비 계상 및 인정기준

🎯 사용기준(제39조, 48조, 57조, 65조)

- ✓ **(기관단위)** 비영리기관(대학, 정부출연기관, 기타기관)은 기관 별도 계정 거쳐 지급가능(과제별 인건비 계상을 관리 필요)
 - * 영리기관은 인건비 기관단위 관리 불가
- ✓ **(연구근접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 지급 불가
 - * 영리기관은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 주요 달라지는 사항

구분	기존	변경
정의변경	인건비 계상비율 및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참여율)	인건비 계상비율 (인건비계상률)
용어변경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
계상률 관리단위	별도없음	(정부출연기관) 1년간의 급여 총액, (그 외 기관) 월급여 총액
계상률 입력주기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매월 입력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1회 입력

🎯 사용용도(제7조)

-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

🎯 사용기준(제40조, 49조)

- ✓ **(계상율)**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율을 월 100% 이내 관리
 -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인건비 및 장학금,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단기근로소득, 창업소득은 총인건비계상율 제외(제40조제4항)
- ✓ **(확약서)**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
 - * 시스템입력은 기관의 해당 회계연도일까지 입력
- ✓ **(계상기준)** 월 기준 학사과정 100만원 이상, 석사과정 180만원 이상, 박사과정 250만원 이상 등으로 대학 자율 결정
- ✓ **(지원규정)** 학생연구자 있는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
 - * 학업 및 연구보장, 처우개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등을 포함

주요 달라지는 사항

구분	기존	변경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운영기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에 한함	학생연구자를 보유한 모든 연구개발기관
학생인건비 계상을 관리 단위	월 단위	월, 학기, 학년 단위
인건비 계상률 제외	불명확	총인건비계상률에서 재정지원사업 등의 인건비 및 장학금,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등 인건비, 창업소득 및 기타단기근로소득 제외
학생인건비 지급시기	월 단위 지급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일괄 지급가능 (연구개발기관계정만 가능) (비통합관리기관) 월 단위 지급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단위	월 단위	학기 또는 학년 단위
박사후연구원 인건비지급	'20.12.31까지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인건비 지급대상)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변경	연구개발계획서에 학생인건비 총액 계상 (일반 및 통합관리금액 총액 기재)	연구개발계획서에 일반 또는 통합관리금액 별도 기재

6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및 인정기준

① 사용용도(제8조)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포함)

② 사용기준(제23조)

- ✓ **(계상)** 연구개발기관의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 ✓ **(심의)** 3천만원 이상(부가세 등 포함) 연구장비 구입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등 심의
 -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준수
- ✓ **(도입기한)** 각 상황별로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기한 준수
 - * (원칙) 최종(단계) 종료일 2개월전, (연구시설장비 구축과제) 최종(단계) 종료일(중앙행정기관 인정사항), (재난, 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종(단계) 종료일 1개월 전(중앙행정기관 인정사항)

③ 주요 달라지는 사항

구분	기존	변경
장비도입기한	최종종료(단계) 2개월 전까지	1.(원칙)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2.(긴급상황) 최종(단계) 종료 1개월 전까지 3.(장비구축과제) 최종(단계) 종료일까지 * 긴급상황 및 장비구축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정사항

7 연구재료비 계상 및 인정기준

① 사용용도(제9조)

-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관리시스템 등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

① 사용기준(제24조)

- ✓ (계상) 연구개발기관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 및 시험설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① 주요 달라지는 사항

구분	기존	변경
재료비 구입기한	과제종료(연차)일까지 〈일부부처는 과제종료 2개월 이전까지 제한〉	최종(단계)종료일까지

① 사용용도(제10조)

- ❖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국외 소재기관 및 외국인 전문기술 비용포함),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활용비
- ❖ 연구실운영비, 연구인력지원비, 종합사업관리비, 그 밖의 비용

② 사용기준(제25조, 제41조, 제50조, 제58조, 제68조)

- ✓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은 사용 불가
-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 원칙(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사용 가능)
 -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 **(회의비)**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비 중 식비 계상불가(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가능)
 - * 10만원 초과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와 영수증,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회의개요와 영수증 구비
- ✓ **(출장비)**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이 아닌 자는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 출장기관에서 식대 제공할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계상
 - * 국외출장의 경우 사전에 출장계획서, 사후에 출장결과보고서 구비 필요(통합이지바로시스템 등록)
- ✓ **(S/W활용비)** 최종(단계) 종료 2개월(긴급상황시 1개월) 전까지 구입시 현금 계상 가능(정부출연 기본사업은 종료일)
 - * S/W사용계약기간(계약기간이 최소단위 입증필요)이 연구과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상가능
 - *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S/W활용비를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 관리 가능(비영리기관만 가능)
- ✓ **(연구인력지원비)** 종신학회비, 과제와 무관한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등 계상불가
-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

연구활동비 계상 및 인정기준

🌀 사용기준(제25조, 제41조, 제50조, 제58조, 제68조)

✔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정부출연기관만 해당) 또는 연구실(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소속된 자 계상불가 * 영리기관은 동일 기관 소속된 자에게 계상 불가

🌀 주요 달라지는 사항

구분	기존	변경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한도	〈신설〉	직접비의 40% 이내 사용가능
소프트웨어 도입기한	과제종료(연차) 일까지	1.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2. (긴급상황) 최종(단계) 종료 1개월 전까지 3. (기본사업) 최종(단계) 종료 전까지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도입기한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개인용 PC는 비영리기관만 허용)	도입기한삭제 (영리기관은 사용기준 별지3호 서식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가능)
기술도입비 현물계상한도 (영리기관만 해당)	〈신설〉	실제기술도입비용의 50% 이내 계상 (해당 기술 도입완료일이 연구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
연구활동비 정산 면제	연구활동비(사용용도 7호(회의비 등))가 직접비의 5% 이내일 경우 전문기관 정산면제	〈삭제〉
연구근접지원인력 지원대상	연구활동비 지급불가(출장비 등)	연구활동비 지급가능 (단, 연구과제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함)

① 사용용도(제11조)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② 사용기준(제24조)

- ✓ **(계상)** 수정인건비(인건비(현물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 이내 계상**
 - *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원래계획) 계상금액보다 증액 불가
- ✓ **(입력)**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미지급인건비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
 - * 미지급인건비 = 연구과제 참여기간동안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또는 다른 연구과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X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 **(평가)** 연구개발기관은 참여연구자가 전부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기준 마련 및 지급
- ✓ **(집행)**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 사용액의 **70% 초과 집행 제한**
- ✓ **(제한)**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 초과 금액 및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의 20%p 초과할 경우 연구수당은 정산 시 회수

① 사용용도(제12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① 사용기준(제27조)

- ✓ (계상)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 이내 계상
 - *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원래계획) 계상금액보다 증액 불가
- ✓ (집행)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것을 연구비 사용 간주
- ✓ (정산)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산 실시

🎯 사용용도(제15~17조)

-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 ❖ (연구지원비) 기관공통비용, 사업단운영비,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 ❖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 및 출자금

🎯 사용기준(제30~32조)

- ✓ (간접비비율적용) 연구개발과제 시작(단계)되는 시점의 해당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 원칙
- ✓ (통합관리) 비영리기관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 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는 연구개발비 사용된 금액으로 간주
- ✓ (조정) 해당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연도 간접비 조정 가능
- ✓ (제한)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 금지
- ✓ (구분관리) 대학(산학협력단 회계)은 연구과제의 간접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 ✓ (집행)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사용 가능

🎯 주요 달라지는 사항

구분	기존	변경
간접비비율 적용시점	협약체결 시점(당해연도별, 단계별 협약체결시점 등)	연구개발과제(단계구분된 경우 해당단계) 시작시점
간접비 증액가능여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 불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가능(사전승인사항)
간접비 이관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시 간접비 증액 불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가능(사전승인사항)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1.(원칙) 5% 2.(예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중소기업은 10% 계상가능	10%
간접비 기관통합관리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만 근거 존재	1.(비영리기관) 통합관리가능 2.(영리기관) 불가
사용제한	〈신설〉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 불가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등

🎯 사용절차(제70조)

✓ **(연구비사용)**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외),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발의

✓ **(사용내역입력)**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구분	일괄지급 연구과제	건별지급 연구과제
연구비카드사용	연구비카드 결제대금 이체일로부터 5일 이내	연구비카드 사용일로부터 카드결제대금 이체 전까지
그 밖의 경우(계좌이체 등)	연구비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연구비 사용 이전까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해당없음
사용기준 제22조 제4항 (보고서, 연구수당 등)	사용실적보고일까지	해당없음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제외)	연구비 사용 후 1개월 이내	해당없음

✓ **(자체재원사용)** 연구개시 후, 연구개발비 지급 전에도 자체재원 사용가능(제72조)

✓ **(증명자료보관)** 전체(단계)종료된 후 5년간 보관(전자문서법에 따른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보관 가능)

🎯 주요 달라지는 사항

구분	기존	변경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모든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운영 가능	영리기관(공기업 제외)은 통합관리 불가
연구비 지급 지연시 자체재원 사용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만 가능	모두 가능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기관 자체재원 사용 가능)
증명자료 보관기한	연구기간 종료 후 5년(불명확) (해당연도 종료일 또는 최종종료일부터 5년 등)	전체(단계) 종료일부터 5년
전자문서 보관대상	영수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적 보관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모두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 가능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입력기한	1. (일괄) 집행 후 5일 이내 2. (건별) 사용내역 입력 후 집행	연구과제의 상황별 별도 규정
자체회계감사 생략	연구비 총액의 5천만원 이하 연구과제의 경우 자체회계감사 생략가능	〈삭제〉

🎯 승인사항(제73조)

- ✓ 연구개발과제(단계)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 ✓ 연도별 정부지원 또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변경
- ✓ 연구개발과제(단계) 간접비 총액 증액
- ✓ 영리기관의 현금계상 인건비 변경
- ✓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부가세 등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부가세 등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변경 구입
 -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부가세 등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취소
 -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과 다른 공간에 설치운영
-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
- ✓ 해당 단계의 직접비(현물제외)를 다음 단계로 이월하는 경우

🎯 정산(제79~85조)

- ✓ **(정의)** 협약해약 또는 단계종료(최종) 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행위
- ✓ **(대상)** 전체 연구개발비(정부지원, 기관부담, 그밖의재원 및 해당 연구과제 산입한 이자 포함)
- ✓ **(정산기준)**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사전승인사항, 이자의 사용용도 등에 부합하는 경우 인정
- ✓ **(제출서류)** 자체회계감사의견서, 연구개발비 사용증명자료, 현물부담확인서,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 ✓ **(정산방법)** 통합이지바로시스템의 정보 및 증명자료를 활용하는 온라인 정산 원칙
 -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금지
- ✓ **(정산이의신청)** 정산결과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 이의신청가능(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회수(제83조)

- ✓ (회수금액) 정부가 지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
 - * 직접비 사용잔액(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제외),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 위반금액(현물부담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지원비율과 무관하게 회수)
 - *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
 - * 간접비 사용잔액 : 연구과제 협약해약인 경우, 영리기관(공기업제외)에 해당되는 경우

 주요 달라지는 사항

구분	기존	변경
정산주기	연차정산	(원칙) 단계정산(단계구분없으면 총연구기간 정산) - (연차종료) 사용내역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입력 - (단계(최종)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정산제출서류	사용실적보고서, 자체회계감사의견서, 현물부담확인서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추가)
정산대상	일부 과제 추출(5% 이상)	모든 연구과제 정산
정산시점	〈신설〉	전체(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실시(착수)
상시점검	〈신설〉	통합이지바로시스템을 통해 연구기간 중 상시점검 가능
정산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통합이지바로시스템 활용 원칙
회수금액 면제	회수금액이 1만원 미만을 경우 제외	〈삭제〉
회수금액 반납기한	별도없음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
정부지분율, 직접비사용비율 등 산출기준	해당연도	전체(단계) 연구기간 단위

4.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용기준 특례

1 규정체계 및 계상기준

규정 체계(제116조)

- (사용용도) 시행령 별표2(과기 및 이공분야와 동일)
- (계상기준) 제18~제72조는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은 별표7,8을 우선 적용
 - * 별표7 및 별표8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기준 제1조~제1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학술단체지원 제외)

- **(전용)** 직접비(인건비 제외) 총액의 20% 이내에서 직접비(인건비 제외)를 인건비로 전용가능
 - * 인건비를 직접비 내 다른 항목으로 전용불가
- **(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제한적 전용가능(단, 전임교원 임용 또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호 기관 취업에 한함)
 - * (연구책임자 경우) 중앙행정기관 승인으로 직접비 중 다른 항목으로 전용
 -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제외) 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
- **(인건비)**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전부 계상(학생인건비는 해당없음)
- **(학생인건비)** 학사과정 월 100만원 이내, 석사과정 월 180만원 이내, 박사과정 월 250만원 이내
- **(도입기한)** 연구시설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연구종료 1개월 이내 도입
- **(연구수당)**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월 40만원 이내 계상(단, 과제특성 고려하여 연구수당 계상기준 달리 정할 수 있음)

1 규정체계 및 계상기준

학술단체지원사업

- **(학술대회지원)** 연구활동비로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회의장임차료, 소프트웨어활용비, 기타 사용
 - * 소프트웨어활용비는 실제 필요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계상가능
- **(학술지지원)** 연구활동비로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윤리활동비*, 기타경비*를 사용가능
 -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사업에 한하여 사용가능
 -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제외) : 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

2 주요 달라지는 점

공통기준

구분	기존	변경
연구비지급방식	일괄지급	일괄 또는 건별지급 연구과제별로 다르게 지급
연구비시스템사용	별도사용하지 않음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사용(법 제13조)
연구기간 외 사용	별도없음(과기분야 규정 준용)	연구최종(단계)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일부 사유(보고서 발간비용 등)에 한해 사용가능
현금사용가능حد도	당초 직접비의 2% 이내	〈삭제〉
항목전용제한	당초 직접비(인건비(전문인건비+학생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 인건비로 전용가능	직접비(인건비 제외(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 이내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가능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간 전용가능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전용불가
	학술활동수당 증액 가능	연구수당 증액 불가 (단, 사용기준 별표7 공통기준 3호에 해당할 경우 가능)
	간접비 증액불가	간접비 증액가능(사전승인사항)

2 주요 달라지는 점

인건비

구분	기존	변경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여부 불명확	계상가능
학사급 및 석사급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계상가능	학생인건비 계상불가(인건비 계상가능)
연구기간 외 사용	연구기간 종료 후 1년간 사용가능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불가 (출연연 및 특정연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특례적용)
다른 연구기관 소속 학생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계상가능	학생인건비 계상불가(인건비 계상가능)

연구시설 · 장비비

구분	기존	변경
연구시설장비도입	구입금액과 무관하게 계상가능	건당 3천만원 이상(부가세 등 포함) 연구시설장비 구입 시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 및 ZEUS시스템 등록

2 주요 달라지는 점

🎯 연구활동비

구분	기존	변경
회의비집행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계상가능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계상불가
학회참가비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계상불가	계상가능
논문게재료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가능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불가
연구환경유지비	계상불가	계상가능(자체규정 마련 필요)
연구실운영 소모성경비	계상불가	계상가능(자체규정 마련 필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미계상 시 집행불가	계상가능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한도 없음	직접비의 40% 이내 사용가능
소프트웨어활용비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경비만 인정	사용계약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입증 시, 연구기간 초과되어도 집행가능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제출의무 없음	국외출장비 지급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출

2 주요 달라지는 점

🎯 연구수당

구분	기존	변경
지급대상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만 가능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 지급가능 (단,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계상불가)
계상한도	1인당 월 40만원 이내	1인당 월 40만원 이내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연구수당 회수	〈신설〉	1.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 초과금액 회수 2.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p초과한 경우 회수

🎯 간접비

구분	기존	변경
간접비 회수	〈신설〉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 초과한 경우 회수

과기(이공)분야와 인문사회분야 주요 차이점(혁신법 중심)

구분	기존	변경
항목 전용제한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제한 없음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제한 있음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비영리법인 연구부서 소속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 계상가능	계상불가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통합관리 적용	통합관리 불가
인건비 지급단가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적용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정한 급여기준 (기준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적용)
인건비 계상	총인건비계상을 범위내에서 여러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계상가능	하나의 학술지원사업에 모든 인건비를 계상 (일부 또는 전부 다른 재원으로 계상불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학사과정: 월 100만원 이상 석사과정: 월 180만원 이상 박사과정: 월 250만원 이상	학사과정: 월 100만원 이내 석사과정: 월 180만원 이내 박사과정: 월 250만원 이내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한	(원칙) 전체(단계) 종료 2개월 이내	(원칙) 전체(단계) 종료 1개월 이내
연구수당 계상기준	수정인건비의 20% 이내	1인당 월 40만원 이내
연구수당 지급대상자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도 연구수당 지급가능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는 연구수당 지급불가



2021년도

상반기 연구비 집행관리 포럼

감사합니다.